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583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6. 4. 2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583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시장

나. 제출일자 : 2026년 03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03월 31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6.2.5~ 2.25.)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 본 개정안은 우선 현행조례 ①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이하 “시행규칙”이라는 약칭을 제2조제1항으로 이동시키고(안 제1조 및 제2조), ②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기존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b>시행규칙</b>”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식품위생법</u> <u>시행규칙</u>」 ----- ----- -----.</p>
<p>제2조(영업장소) ① <b>시행규칙</b>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b>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b>(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p> <p>1. ~ 9.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영업장소) ① 「<u>식품위생법</u> <u>시행규칙</u>」(이하 “<b>시행규칙</b>”이라 한다) ----- <b>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b>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2 검토 의견

### 가. 약칭의 위치 이동 관련

- 법제처에서는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sup>1)</sup>, 약칭을 이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제2조제1항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이 조례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약칭하지 않고, 개정안 제2조와 같이 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약칭할 경우(아래 표 참조),  
 그 이후 조문에서 나오는 “시행규칙” 이라는 용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조례안에서 “시행규칙” 이라는 용어가 약칭된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와 다른 의미(=조례 시행규칙)로 사용되는 조문(현행조례 제11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조례 안에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문제 발생>**

구분	조문	해당 조문에서 “시행규칙”의 의미
개정안 제2조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자료: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 85.


2. 목적규정 / 나. 규정의 표현방식 /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구분	조문	해당 조문에서 “시행규칙”의 의미
현행조례 제4조	① <b>시행규칙</b>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현행조례 제11조	<b>제11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시행규칙

- 따라서, 약칭 사용으로 인한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려면, 개정안 제2조제1항에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 관련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에서는 그간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제한하고 있었음(아래 표 좌측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위생법 시행규칙</b> [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p> <p><b>제42조(영업의 신고 등)</b>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13. (생략)</p> <p>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b>특수직업형 특수자동차</b>(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b>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b>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위생법 시행규칙</b> [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p> <p><b>제42조(영업의 신고 등)</b>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b>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b>(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b>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b>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신규법비교**(검색일: 2026년 4월 6일 기준)

-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을 활성화” 하고<sup>2)</sup>,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sup>3)</sup>, 지난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을 일부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주류도 판매 가능)’까지 확대함(위 표 우측 참조).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검색일: 2026년 4월 6일 기준)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허용 업종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목적규정 / 나. 규정의 표현방식 /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 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93호)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등록·신고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까지 확대(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참고자료**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현황(26년 3월 말 기준)

○ 영업장소 지정운영 자치구 : 23개 (관악구, 성북구 제외)

구	분	공공기관 주행차	공공기관 관장	공공 재	공공 용산	공 재	용 산	관 단	광 지	광 장	도 공	시 원	문 시	화 설	보 행 자 로	전 용	부 설	주 자	창	영업자 지 정 장 소	신청 장 소	지 주	자 관	체 사	체 시	육 설	하 천	학 교	총 합 계
	계	8	46	12	1	4	38	12	22	7	29	210	10	13	25	437													
1	영등포구																						108						108
2	서초구			11	4					1	21										10		33			2		82	
3	종로구	1		1											22								15				5	44	
4	중구	1		31	1																5						1	39	
5	강남구																						30					30	
6	마포구													9									11				3	23	
7	송파구								1		3										3				9	1	1	18	
8	금천구						2														8					5		15	
9	광진구										5																6	11	
10	동대문구	5									2						2											9	
11	강북구	1				1					2						3										1	8	
12	도봉구																				1		2				4	7	
13	동작구						2				3										1						1	7	
14	강서구									3													2			1		6	
15	서대문구										2							2					1			1		6	
16	중랑구			1																			5					6	
17	용산구			1	2																						1	4	
18	강동구																						3					3	
19	구로구																									3		3	
20	성동구																								1		2	3	
21	노원구													2														2	
22	은평구			1																	1							2	
23	양천구													1														1	

○ 영업업종 기준 : 총 437개 (휴게음식점영업(437개), 제과점영업(0개), 일반음식점영업(0개))